「군포도시공사 정보공개 운영내규」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 군포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한 대

2023년 6월 16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 81 호

군포도시공사 정보공개 운영내규

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이 내규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률"이라 한다)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포도시공사(이하 "공사"라한다)및 소속부서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① "정보"란 공사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
 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도면·사진·필름·테이프·슬라이드

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.

- ② "공개"란 공사가 이 내규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나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, 또는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른 정보통신망(이하 "정보통신망"이라 한다)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.
- ③ "주관부서"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④ "처리부서"란 해당 정보관련 업무 처리를 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제3조(정보공개의 원칙) 공사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「법률」과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4조(적용 범위) 공사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5조(공사의 의무) 공사는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· 관리하여 정보의 신속한 검색과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, 정보공개시스템에 연계하여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- 제6조(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당관) ① 사장은 공사의 정보공개업 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 으로, 정보공개업무 처리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.
 -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
 - 1. 정보공개심의회 운영
 - 2.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 및 지원

- 3. 정보공개 담당직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
- 4.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
-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운영을 확인·점검하고,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7조(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)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정보공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장 정보의 공표

- 제8조(정보의 사전공표 등)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의 구체적 범위·주기·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·비치하고,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법률」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렇지 않다.
 - 1. 감사·기획·예산·경영·회계·재정 등 공사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보
 - 2. 「지방공기업법」제46조에 따른 경영공시 항목
 - 3. 반복 공개청구되는 정보
 - 4.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높은 정보
 - 5.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정보
 - ② 공개 대상정보 공표목록에 따라 해당정보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

한다.

- ③ 공표업무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. 다만, 담당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업무의 부서를 지정한다.
- 제9조(비공개 대상정보) ① 사장은 「법률」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, 이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 - ② 사장은 제1항의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보장되는 국민의 알권리와,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 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 - ③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, 국민과 공사직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·보완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정보목록의 작성·비치 등) ① 사장은 보유·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, 그 목록을 공사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보목록 중 비공개 대상정보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을 비치해 두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번호·문서제목·등록일자·기안자·공개여부·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3장 정보공개심의회

- 제11조(정보공개심의회 설치·기능)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
 - 2. 「법률」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 -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.
 - 1.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경우
 - 2. 단순·반복적인 청구인 경우
 - 3. 법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에 청구인 경우
- 제12조(심의회 구성)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심의회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의 본부장으로 하며,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 심의회 위원은 소속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사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되,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 3분의 2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.
 - 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
 - 1. 위원장: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의 본부장

- 2. 내부위원: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의 장
- 3. 외부위원: 정보공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 사람
-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하고,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의 담당자로 한다.
- 제13조(위원의 임기)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인사발령 등 변동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자동 승계한다.
- 제14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.
 -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 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 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-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위원의 해촉) 사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- 1.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- 2.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. 제14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
-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
- 5.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제16조(회의·의결정족수 등)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단,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.
 -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공개로 결정한다.
 - ③ 심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"별지 제 1호서식"의 서면심의 의결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위 원은 참석한 것으로 본다.
 - ④ 심의회의 서기는 "별지 제2호서식"의 의결서 및 "별지 제3호서식"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17조(심의절차) ① 정보공개 처리 담당관은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일 이내에 "별지 제4호서식"을 통해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요청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과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심의회 종료 후 총괄부서는 그 결과를 담당부서 및 청구인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. 특히 비공개로 결정된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·결정이유,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
- 제18조(비밀유지) ①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회 중에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,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 - ②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"별지 제5호서식"의 정보공개 심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수당의 지급) 사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20조(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) ① 총괄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 - 1. 법 및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내용
 - 2. 정보공개청구의 처리절차 및 불복절차 등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내용
 - 3. 정보공개시스템 및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내용
 - 4. 그 밖에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
 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, 시청각교육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	관	부 서	경 '	영 지	원 부
입	직	위	경영	경지 원	부 장
H	성	명	곽	성	우
아	직	위	인 시	ㅏ총 무	팀 장
[긴	성	명	신	재	두
 자	담당/	사 성명	김	학	삼
_^r	(전	화)	(39	0 - 7 (642)

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 의결서

심의일시					
심의안건					
불참사유					
검토의견					
심의위원	소 속	성 명	의결 가	내용 부	서 명
위 원					

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

심의일	길시								
심의인	난 건								
의결니	H 용								
사	î								
ه (د (د	1 01	ž.	ふ	2-1	тн	의결	내용	ני	т г Ì
심사우	1원	仝	속	성	명	가	부	서	명
위 원	장								
위	원								
위	원								
위	원								
위	원								
위	원								
위	원								

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.

년 월 일

군포도시공사 정보공개심의회

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

일시 및 장소	일시:장소:	년	월	일(요일)	작성자	(서명)
회의 진행순서						
심의안건						
발언요지 (토의내용)						
결정사항 및 표결내용						
특기사항						
참석자	구 분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			소 속	성	경 서 명

군포도시공사

수신자

(경유)

제목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

『군포도시공사 정보공개 운영내규』제17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0 ,	성명(법인명 등) 주소 및 연락처	
	<u> </u>	
 심의를 요하는 사항		
담당부서 검토의견		
그 밖	의 참고사항	

- 붙임 1. 심의 설명자료 ○부.
 - 2. 증빙자료(청구서, 결정통지서, 이의신청서, 비공개자료 등) ○부. 끝.

발 신 명 역인

 기안자
 직위
 서명
 결재권자
 직위
 서명

 협조자
 기상명
 보서명-연도별
 의련번호(시행일)
 접수
 부서명-연도별
 의련번호(접수일)

 우
 도로명주소
 기종패이지 주소

 전화번호(기상명)
 기상명이
 기상명이

정보공개심의 서약서

본인은 군포도시공사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정보공개심의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 다.

- 1. 본인은 군포도시공사의 정보공개심의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,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심의할 것을 서약한다.
- 2. 본인은 정보공개심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관련 자료를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으며, 이에 관여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 을 것을 서약한다.

년 월 일

서 약 자

소 속:

직 위:

성 명: (서명 또는 인)

군포도시공사 사장 귀하